
모햇 제1차-21-01 사업규약

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 및 정관에 규정된 사항들에 기반하여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사업규약”으로 정리하여, 총회를 통해 의결하고 공포한다.

□ 사업명 : 모햇 제1차-21-01 사업 (‘21년도 1차사업, 이하 “사업”)

- 건물옥상(주차장 포함)을 임대하여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 20년장기고 정계약으로 전력시장에 판매하여 수익을 조합원에 배분함.
- 발전용량: 총합 3,000kWp (개별설치 최소10kW이상, 60m² 이상)
- 사업비: 5,250백만원 (출자금 1,050백만원 이상, 금융조달 4,200백만원 이하)
- 일정 : 모집(~’21/1), 구축(~’21/05), 상업운전(’21/06~)
1,000kWp 단위로 모집 및 사업 실행함.
- 수익배분 : 출자금배당(’21부터 분기별 지급), 펀드 이자(제5조에 따름)
- 주요조건 : 출자금배당 연8%, 조합원펀드(연5%, 1년 만기, 갱신형)
당해년도 현금 흐름상 부족분은 운영사 (주)에이치에너지에서 무이자 보강 후 이익잉여금 발생시 회수함.

제1조(출자) ① 조합원은 최소 3구좌를 출자하여야 한다.

② 모든 출자한 조합원에게는 조합원펀드 가입을 보장한다.

제2조(사업비 조달) ① 사업비는 조합원 출자금으로 1,050백만원(20%) 이상, 금융조달 4,200백만원(80%) 이하로 한다.

② 금융조달은 조합원 차입금(이하 “조합원펀드”)을 우선하여 모집한다.

③ “조합원펀드” 모집 부족분은, 조합원펀드 이자보다 낮은 외부 금융대출로 진행키로 한다.

제3조(잉여금배당 및 재투자) ① 조합은 잉여금에서 법정적립금 적립 후, 출자금의 8%를 - 조합원이 투자한 설비에서 발생한 수익이므로 - 이용실적배당액으로 지급키로 하며, 당해년도 부족한 금액은 다음 회계년도로 이월되어 지급키로 한다.

② 배당 후 남는 이익잉여금은 후속 확산사업에 투자하여 조합원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예상되는 사업의 수익, 연간 지분의 변화, 탈퇴시 환급금은 정기 총회를 통해 공지하고 승인을 받는다.

③ 이때 투자된 금액은 조합원 출자금에 합산키로 한다. 단, 사업별로 추가된 출자금을 구분하고 배당규칙 또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④ 후속 확산 사업에 투자되지 않은 이익잉여금은 본 사업에 참여한 조합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지분화 한다. (예. 본 사업에 참여치 않은 조합원이 있을 경우, 해당 조합원의 지분으로 합산치 아니한다)

제4조(이용실적배당액 지급 및 분배) ① 조합은 태양광발전설비의 상업운전 개시 후, 매년 6월, 9월, 12월에 제3조 1항에 따른 예상배당액을 일할 계산하여 조합원이 등록된 계좌로 지급하고, 3월 정기 총회 시 연간 배당액을 최종 정산처리 한다.

제5조(조합원 펀드) ① “조합원펀드”는 1년 만기, 금리 5.0%로 하며, 이자는 매월 말일까지 조합원의 등록된 배당통장으로 지급한다.

② 펀드 운영 기간은 첫 발전소가 상업운전을 시작한 달(n)의 1일부터 다음해 전달(n-1)의 말일까지로 하며, 납입기간은 펀드 운영 시작일 전까지로 정한다. 단, 사전 공지를 통해 납입 일자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사업 구축 기간 발생한 기납입 펀드에 대한 예치 이자는 시중금리 수준의 연1.5%의 금리를 적용하여 지급하되, 실제 첫 상업 운전 개시 후, 조합원 펀드의 당월 이자와 함께 월별로 이월해서 지급한다. 예를 들어, 조합원펀드 납입을 '21년 3월에 하였고, 5월에 상업 운전을 시작하였을 경우, '21년 3월 예치 이자는 '21년 6월에 펀드 당월 이자와 함께 지급된다. 21' 4월 예치 이자는 '21년 7월에 펀드 당월 이자와 함께 지급된다. 단, 이에 대한 연체이자 는 없

는 것으로 한다.

④ 조합은 운영사를 통해, 매 회계년도 종료 60일 전에 조합원을 대상으로 “조합원펀드” 연장 의사를 확인하고 연장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⑤ 펀드 만기 60일 전까지 별도의 의사표명이 없는 한, 해당 조합원의 펀드는 매년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단, 제6조 2항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6조(펀드상환 및 만기연장) ① 조합은 매 회계년도 종료 후 일정 분량의 펀드를 상환기로 한다. 상환 물량은 직전 년도 유보금을 제외한 이익잉여금으로 하며, 이사회를 통해 확정 후 정기 총회에 보고한다.

② “조합원펀드” 상환을 신청한 물량이 “원리금상환액” 보다 적은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조합원의 납입펀드를 우선순위로 조합원의 연장희망여부에 관계없이 상환 처리기로 한다.

1. 제5조 4항에 따른 연장 의사표명을 하지 않은 조합원
2. 연장이사 표명한 조합원 중 펀드 납일 일시가 늦은 조합원

(예시: 펀드액 100백만원 중 상환을 희망하는 분량이 10백만원이지만, 조합이 20백만원을 상환처리기로 한 경우 희망자 외에 추가로 10백만원에 해당하는 조합원펀드도 상환 처리된다.)

③ 상환을 신청한 물량이 “원리금상환액”보다 많을 경우는 아래의 순서로 처리기로 한다.

3. 운영사를 통해 기존 조합원을 대상으로 추가 모집한다.
4. 이익 유보금을 통해 상환 처리한다.
5. 그래도 부족한 경우, 운영사가 해당 펀드를 양도받기로 한다. 단, 이 경우 양도 물량은 추후 조합이 조합원을 대상으로 원리금상환시 우선하여 상환처리기로 한다.

④ 펀드 상환액은 만기 종료 및 총회 의결이 끝난 후, 1개월 내에 조합원이 등록된 계좌로 지급 키로 한다.

제7조(운영사역할 및 책임) ① 본 사업의 운영사는 (주)에이치에너지로 하며, 운영사는 그 역할은 다음과 같으며 이에 대한 책임도 함께 부여받는다.

1. 조합원 모집홍보/가입처리 전반
2. 옥상 확보 및 계약
3. "사업"의 구축, 운영관리, 유지보수, 전력의 거래 및 정산 일체
4. 조합의 운영, 경영관리, 세무회계 및 정산

② 운영사는 본 "사업"의 구축, 운영관리, 유지보수, 전력거래 등에 따른 일반적 책임과 더불어 조합 "사업"의 안정적 경영, 참여한 조합원의 지속적 수익 실현을 위해 아래와 같이 운영사 책임을 부여받는다.

1. 제6조 3항의 5에 따른 조합원펀드 양도책임
2. 제3조 1항과 제5조 1항에 따른 출자금 배당 부족시, 조합 운영관리비용 청구연장을 통한 현금흐름 보강

③ 본 조 1항 내지 2항을 포함한 운영사의 역할 및 책임을 별도의 "운영사 사업약정"(규정)로 체결하며 조합원들이 가입 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공지한다.

제8조(설비 감가상각) 본 사업설비는 감가상각정액법에 의해 20년간 상각한다.

제9조(조합의 분할) ① 조합은 조합 사업의 안정화를 위해, 발전시설의 20년 고정가격 장기 계약 등을 체결해 사업을 운영할 수 있고, 이때 총회의 승인을 받아 조합을 필요한만큼 분할하여 운영할 수 있다.

모햇 제1차 협동조합



본 규약은 총회 통과가 되는 즉시 발효된다.